

## 시간제등록생 운영규정

제정 2008. 3. 1

개정 2012. 7. 1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칙 제26조의 2에 의거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자(이하 "시간제등록생"이라 한다)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등록자격)**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 한다. 다만, 대학재적 중에 시간제 등록생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점은 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**제3조(선발방법)** ①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별로 선발하되 선발방법은 총장이 정하는바에 의한다.

② 전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공고한다.

**제4조(모집인원)** ①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% 이내로 한다.

② 전항의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5조(수업 및 재학연한)** 시간제등록생과정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

**제6조(교육과정)** 해당학과의 교육과정을 따른다. 다만 전공이 일치하지 않은 학생이 이수한 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인정한다.

**제7조(학기당 수강학점)** 학기당 수강학점은 12학점까지로 하며 연간 24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.

**제8조(등록금)** 시간제등록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총장이 정하는 신청 학점에 따라 산정된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9조(신분변동)** 우리대학에서 시간제등록을 이수한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을 인정받고 본 대학 편입학 지원자격의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우리대학 편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학위수여)** ① 시간제등록생으로 등록하여 우리대학 동일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이 50학점 이상이고, 타 대학(교) 및 학점인정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과 합산하여 80학점 이상 일 때에는 당해 학과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② 학위종별은 학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.

③ 학위수여 절차 및 요건은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5조, 제 16조, 동법 시행규칙 제 8조 및 제 9조에 따른다.

**제11조(준용)** 이 규정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학칙과 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